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14(목) 10:00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04호
- 나. 제 출 자 : 이인식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3. 9. 5.

## 2.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훈정책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추가 (안 제3조제7호 신설)
- 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안 제4조제6호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및 제5조, 제19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의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됨.

### 나. 주요 내용

#### 1)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추가 (안 제3조제7호 신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를 적용대상으로 추가함
- 금천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 : 20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제정)

보훈대상 중 국가유공자가 아닌,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안 제4조제6호 신설)

### 다. 서울시 타구 제정현황

- 보훈보상대상자도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규정
  - 서울시 : 5개 자치구(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용품 지원
  - 서울시 : 7개 자치구(종로구, 도봉구, 광진구, 구로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 라.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의 보훈보상대상자의 적용범위 추가 및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현황 : 20명(2023년 7월 기준)
- 보훈보상대상자 지급내역 및 24년도 소요예산
  -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12개월×20명 = 12,000천원
  - 설, 추석, 보훈의달 위문금 : 20,000원×3회×20명 = 1,200천원

2. 국가유공자 장례용품 지원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
- ※ 연도별 국가유공자 사망 현황

구 분	2023.7.31. 기준	2022	2021	2020	비 고
인원(명)	27	47	46	26	

- 지원내용
  - 금천구 근조기
  - 장례편의용품(세면도구, 답례봉투, 조문록, 담요, 양말, 가방 등 23종)
  - 장례지도사 1인(1일) 파견 : 상조 전문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를 통한 장례컨설팅 서비스 제공, 장례용품 등 배송 및 근조기 설치·회수 등 수행
- 소요예산 : 총8,000천원
  - 근조기 구매 250천원×2개 = 500천원
  - 장례용품 300천원×25명 = 7,500천원

## 관계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